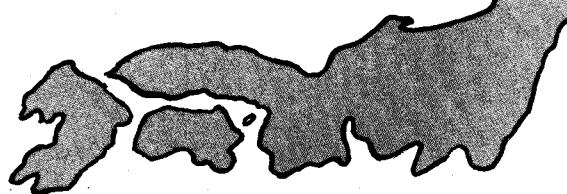


일본산 자연치즈의 생산진흥대책(Ⅱ)



○… 이글은 일본의 “축산의 연구” 7월호의 내용을 축협중앙회 축진기금 관리국장 이…○
○… 홍열씨가 번역한 것임. ○

A

치즈대책의 배경

1985도의 원유수급은 원유생산이 전년도까지의 수급동향을 반영하여 순조롭게 증가시키는 한편, 원유수요의 주체를 점하고 있는 음용우유의 소비가 전년도 보다 하회 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원유수급은 대폭 남아돌게 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비록 신장율의 둔화경향은 있었을망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던 음용우유(飲用牛乳)의 소비량이 여름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한데 대하여 관계자간에 크나큰 문제거리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글머리에서 소개한바같이, 유제품이 대폭 남아돌므로서 감산계획이라는 엄격한 계획적생산을 실시하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한편, 1979년의 계획생산의 실시이래, 매년 원유생산량을 2~3% 증가로 유지 시켜온 생산자는 1985년 9월이후의 엔고의 영향에 의한 사료 가격의 하락과 기타 생산자재가격의 하락도 있고하여, 원유생산량의 감축에는 저항이 심했다.

다른 한편으로 엔고의 영향은 자연치즈수입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고 국내산치즈의 대외 경쟁력은 상대적약화를 가져와 유가공업체로서는 원유의 기준 거래가격으로의 매입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자연치즈의 국내생산을 유지한다는 것은 점차 부담스러워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생산자를 중심으로 국산 자연치즈진흥을 요망하는 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관계자간에 이에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5년도에는 감산계획실시의 결정, 보증가격등 행정가격의 인하등 관계자의 의견 조정을 요하는 사항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치즈진흥에 관한 검토는 충분히 갖지 못하여, 결국은 시행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조치로서 1986년도의 가격관련대책에 있어, 치즈진흥의 기초적인 조건정비의 일환으로서 일본사람의 기호에 맞는 국산 자연치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원료우유등의 경비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축산진흥사업단 지정지원대상사업의 국산 자연치즈 수요개발 촉진사업. 지원액 2.8억엔). 또한 축산진흥

심의회로부터 국산 자연치즈의 생산진흥에 대하여 시급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도록 건의가 있고하여, 이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축산국내에서 이문제를 계속 검토하게 되었다.

한편 생산자 측면에서는 원유수급이 남아도는 형편으로 1985년도 후반의 원유출하를 억제하기 위해, 수요를 웃도는 원유를 특별 잉여우유로서 유제품으로 가공하여 시장격리(隔離)를 도모하였지만 이중 일부는 자연치즈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기준거래가격으로 원유거래로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자연치즈에 대응한 국산 자연치즈용 원유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생산자가 어느정도 우유값을 싸게하여 자연치즈를 제조위탁하고 이것을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원유잉여량을 처리 하였던 것이며, 일종의 긴급피난적 조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1986년도에 있어서도 실시되었다(1985년도 3.5만톤, 1986년도 6.3만톤)

5 낙농안정특별대책 기본 방향

1986년도에 들어서도 원유수급은 여전히 남아도는 경향이 지속되면서, 자연치즈의 수입가격도 엔고(丹高)의 정착으로 그 가격은 저수준 추세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치즈진흥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정상의 중요도와 구체적인 시책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낙농의 중요도와 치즈진흥

낙농은, 우유·유제품의 생산공급이라는 역할 외에도 국내산 쇠고기 공급의 약6할을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자급사료를 생산하는 토지이용형 농업의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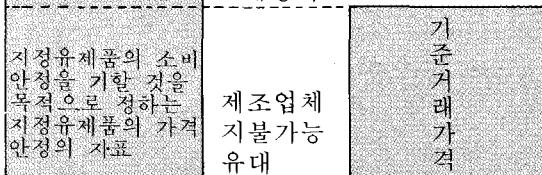
그러나 우유와 유제품 수요가 정체하고 있는데, 1986년도의 계획생산실시에서 볼 수

그림 2 부족불제도의 개요(1987년도 가공원료유보증가격등)

[안정지표가격]

버터(원료)	1,100원 / 1kg	(1,225)	△ 10.2%
탈지분유	13,180원 / 25kg	(13,530)	△ 2.6%
전지가당연유	8,360원 / 24.5kg	(8,950)	△ 6.6%
탈지가당연유	7,500원 / 25.5kg	(7,960)	△ 5.8%

[유제품] 제조업체 [가공원료당유]
제조 판매경비



지정유제품

버터, 탈지분유, 전지가당연유, 탈지가당연유, 전분유, 전지무당연유, 탈지유(자우포육용)

* 특정유제품(이것의 원료유인 가공원료유가 부족불의 대상)

* 1986년도까지는, 자연치즈도 포함되어 있었음.

△ 20만톤

한도수량
210만톤
(230만톤)

정부
부족불

보급금

제조업체지불

가공원료유지역의
생우유재생산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정하는 가공원료
유의 판매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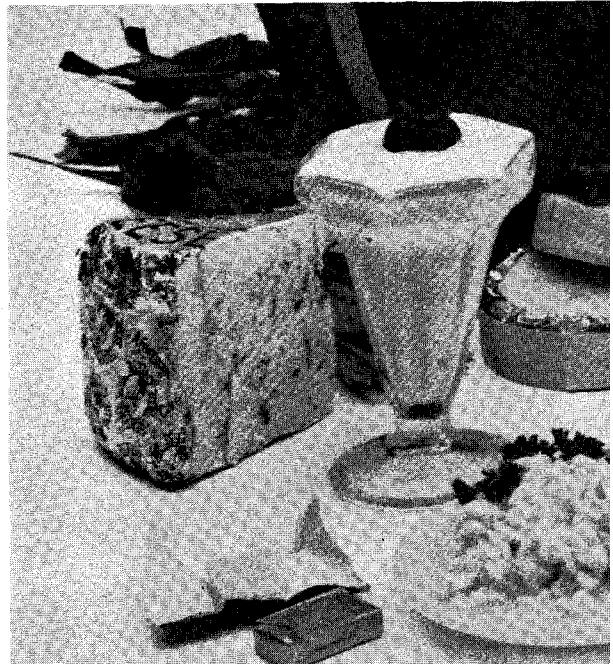
있는 바와 같이 낙농생산은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증가하는 쇠고기 수요에 대응하는 국내생산의 확대 수급안정이나, 수도작농업 확립대책 등을 통한 토지이용형농업의 육성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국제경쟁력이 있는 낙농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원유수요의 확대를 통하여 낙농의 규모확대등을 도모하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생산자측에서도 생산억제가 실시되고 있는 중에도 생산성이 높은 농가에 있어서는 가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양적확대를 하려고 하는 농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수요가 확대, 정착하고 있는 자연치즈의 국내생산의 조건정비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상황을 현행 부족불제도와의 관련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부족불제도와 자연치즈

부족불제도는 생우유의 재생산을 확보하면서 유제품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도 가공원료용우유에 대하여(즉 음용우유는 대상이 아님) 생산자가격으로서는 보증가격을 유가공업체의 매입가격으로서는 기준거래가격을 정하고, 보증가격과 기준거래가격과의 차액을 한도수량의 범위내에서 생산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주요한 유제품에 대하여 안정지표가격을 정하고, 시가에 따라 축산진흥사업단이 안정지표가격의 90%가격으로 국내제품을 매입하여,

자연치즈는 그 원료인 우유가 부족불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부족불 제도에 있어서의 유제품생산은 음용 우유의 수급조절 기능을 가진 버터, 탈지분유등을 그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104%를 기준으로 매도하는 구조인 것이다. 또 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한 유제품의 수입은 축산진흥사업단이 일원화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은 주요유제품의 제조업체 판매가격안정조치를 담보로 하여, 가공원료우유의 제조업체 매입가격은 기준거래가격 이상으로 할것이 의무화 되어 있다.

자연치즈는 그 원료인 우유가 부족불의 대상으로 되어있으나 부족불제도에 있어서의 유제품생산은 음용우유의 수급조절 기능을 가진 버터, 탈지분유등을 그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 발족당시, 자연치즈를 부족불의 대상으로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대상에서 꼭 제외시켜야할 적극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도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경위이다.

이와같은 점으로 볼 때, 부족불제도상 자연치즈는 다른 주요 유제품과는 달리 ① 수입이



자유화 되어 있으므로 제품가격이 수입품과의 경쟁관계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 ② 기준거래 가격이 버터, 탈지분유를 중심으로 산출되어 있고, 자연치즈는 그 산출내역에 들어있지 않았다. 이때문에 최근의 세계적인 치즈수급의 완화, 엔고의 지속 등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준거래가격으로 원유인수를 의무화 하는것이 오히려 국산 자연치즈의 생산진흥을 도모 하는데 문제화 되고 있는 면이 있다.

가령 자연치즈의 생산을 부족불제도하에서 유지·확대코자 하려면, ① 기준거래가격을 유제품별로 따로 정하여야 하고 ② 자연치즈의 수입일원화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에 대하여는, 유제품별로 수급조절을 엄밀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외에도 지역이나 제조업체에 따라 유대(乳代)와 부족불의 금액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②에 대하여는, 현재의 국제환경하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데 따른 외국으로부터의 비난을 피할수 없을뿐 아니라 소비자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요의 감퇴를 초래할 위험마저도 있다.

따라서 자연치즈는 부족불제도의 권외에서 생산자및 유가공업체가 자주적으로, 일정한 관세제도하에서 국제적으로 경쟁 할 수 있는 제품가격으로 이를 공급하여 나가는 것이 소망스러운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족불제도의 본래의 취지는 음용우유를 원유전체의 수급안정을 도모하면서 확보하여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이지만, 자연치즈는 보존성이나 대체성의 면에서 버터, 탈지분유등 다른 유제품과 달리, 원유 수급조정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족불제도에 포함시켜두어야 할 적극적 이유가 희박하다.

6

낙농안정 특별대책

이상과 같은 문제를 기초로 자연치즈의 국내 생산진흥의 조건정비가 검토 되어, 결론적으로는 자연치즈의 원료유를 부족불제도에서 제외하고, 생산자 및 유가공업체간에 자주적 거래 가격이 형성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자연치즈를 단순히 부족불제도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유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생산자로서도 그 체재정

최근의 세계적인 치즈수급의 완화, 엔고의 지속 등에 따라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기준거래가격으로 원유인수를 의무화 하는것이 오히려 국산 자연치즈의 생산진흥을 도모 하는데 문제화 되고있는면이 있다.

비를 할 여유도 없고하여, 자주적인 원유거래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당분간 어떤 형태의 지원조치가 필요한것으로 배려되었다.

또, 원료유 공급가격은 수입품과의 경쟁상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수입품 가격이 EC의 보조금수출등으로 상당히 하락하고 있다는 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작년말 1987년도 정부예산안 결정시점에서 자연치즈 국산진흥대책으로서의 「낙농안정 특별대책」이 결정 되었다.

이 대책의 농정상의 중요도는 전항의 (1)에서 논한바 같이 낙농의 안정과 그에 의해 낙농의 다각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명칭도 「낙농안정 특별대책」으로 하고, 축산진흥 사업단의 지정지원 대상사업으로서 1987년도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사업은 1987년도부터 실시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법제적인 정비로서, 치즈원료유를 부족불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부족불법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7. 1. 23 정령 제7호)

사업내용은 치즈원료유에 대하여 생산자 및 유가공업체간에 자주적인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이 거래를 착실하게 정착 시키기 위해 치즈원료유의 생산자에게 장려금 「낙농안정 특별장려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에, 이거래의 안정적 지속을 위하여는 상당기간의 전망이 필요한 것으로 단, 년도별 예산계상이 아니고, 기금방식을 채택하여 5년간의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서, 170억엔의 기금이 설치되었다.

또한 치즈원료유의 거래안정을 위하여는 생산자측에서의 원유생산의 합리적 계획화가 중요한 관건인 동시에 원유의 총체적 수급안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실시주체는 지정단체의 중앙조직인 중앙낙농회의가 선정 되었다.

또한 원료유의 거래정착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치즈진흥을 도모하여가면서, 기술적측면에서도 국산치즈수요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 기본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은 기본구상하에 구체적인 사업실시의 기본적 사항은 「낙농안정 특별대책 사업 실시요강」으로서 발표 되었다. (1987. 3. 10, 1987 축A제711호 농림수산사무차관 의명통달), 사업실시 기간은 1987년도부터 19.1년도까지의 5개년으로서 치즈원료유의 생산자에게 장려금을 교부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매년도 초에 중앙낙농회의가 장려금의 단가 및 당년도의 지원액 규모의 기준이 되는 장려금 교부예정수량을 우선 결정한다. 그때 중앙 낙농회의는 원유

의 거래가격, 원유생산비등을 감안 장려금을 결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축산국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며, 장려금의 단가는 부족불의 보급금 단가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후에, 각 지정단체 및 유가공업체는 원유거래를 하고, 지정단체는 이 계약을 기초로 치즈원료유의 거래가격과 수량을 명기한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중앙낙농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치즈원료유거래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 거래는 장려금 단가가 결정되면 될수있는한 빨리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또 거래단가가 기준 거래가격을 상회하였을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취지로 보아 장려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또, 자연치즈는 종류가 많고 품목이 다양하여 그 제품가격도 수입품과의 경합 조건뿐 아니라, 연(軟)치즈와 같이 수입품이 거의 없는 것도 있어서 품목별, 지역별 설정에 맞추어서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수속절차를 거쳐, 실제로 치즈 원료유로서 현지사가 확인한 생우유에 대하여 장려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과정·절차가 매년도 반복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매년도 당사자간의 성실한 생우유 거래이며, 이 양자간의 굳은 신뢰 관계가 성립되어야 장기적인 국산치즈의 안정적 생산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제품개발에 대해서도, 동시에 5년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생산자와 유가공업자로 구성된 개발팀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있다.

중앙 낙농회의는 원유의 거래가격, 원유생산비등을 감안 장려금을 결정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축산국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며, 장려금의 단가는 부족불의 보급금 단가를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7

맺는 글

이상이 이번의 치즈진흥대책이 수립되기까지의 경위이지만 부족불제도와 자연치즈대책 방안과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점에서 앞으로의 치즈진흥의 방향이 명확해 졌다고 할수 있다. 즉, 자연치즈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가격 격차를 어느정도 의식한 생산체제의 정비가 앞으로 기대되며, 생산자 및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결의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임하지 않으면 국산치즈진흥은 이를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1987년도의 원유거래는 최종적단계에 들어섰지만, 거래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 된것으로 알고있다

또, 장려금 단가는 원유1kg당 15엔으로 결정되어 부족불의 보급금 단가보다 8전의 차가 있다. 생우유거래 수량은 2할정도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 초년도로서는,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의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

우리모두 협회가입 권익보호 앞장서자.